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0
----------	-----

2025. 9. 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8. 14.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특별상의 수상인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상 심사기준 및 후보자조사 근거를 재정비하여 수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의 상 중 특별상의 수상인원을 1명에서 다수로 변경하여 구민포상 기회 확대함(제4조 제2항)

나.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모범가족상의 심사기준 중 세 자녀 기준을 두 자녀 기준으로 변경(제5조)

다. 수상후보자 공적조사의 주체를 감사담당관에서 간사(주민자치과장)로 변경하여 현행화(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7. 18. ~ 2025.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조문 배열 정비 및 구체화를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하기 위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안 제2조는 수상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의 서술식에서 개조식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문제점은 없음.
- 안 제3조는 제2조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강남구’로 약칭하였으므로,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날을 규정하기 보다, “구민의 날”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에서 정한 명칭이므로, 본래의 용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을 인용하여 법령 간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문 전체적으로는 간결

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면서도, 근거 조례에서 정한 고유명칭을 존중하여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상 시상 대상과 관련하여,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이나, “다수”라는 용어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여 수상 대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적용의 자의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조항의 개정 목적을 반영하면서도 법령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수정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정부의 다자녀 시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의 다자녀 정책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구정책적 성격을 띠는 바,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모범가족상’의 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른듯하여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심사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 및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특히, 모범가족상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²⁾를 살펴보면 단순히 자녀 수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과 헌신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안 제8조**는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지명을 붙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본 개

1) “특별상의 경우 2명 이상 시상할 수 있다” 또는 “특별상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와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2. 모범가족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가정을 위해 헌신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정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도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적심사’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능과 용어의 통일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공적심사위원회’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2항은 그리고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함.
-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 종전 제8조제4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이동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적어 삭제 후 본 개정조례안 제12조에 관련 규정을 하는 것³⁾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 종전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이동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12조제1항의 규정 중 “그 의장이 된다” 라는 규정은 ‘의장’ 과 ‘위원장’ 의 일반적인 구분에 있어서 ‘의장’ 은 전통적으로는 회의를 주재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적 회의진행자 성격이 강하며, ‘위원장’ 은 위원회의 대표이자 동시에 위원의 일원으로서,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표결권을 가짐. 본 일부개정조례안 동조제3항은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음.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또한, 강남구의회에 이미 “의장” 직위가 있어, 위원회 대표에게도 “의장” 을 사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 모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만약 특정 위원회에서 대표를 독립적 진행자로만 두고 표결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그때는 “의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 사례임.

-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강남구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조사 관련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조문의 배열을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법령 간 체계성과 실무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입법적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60

제안연월일: 2025. 9. 1.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법령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상의 수상인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수상 대상과 시상 시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의 배열을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였으며 불필요한 중복을 줄여 조례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구민의 상 수상대상과 시상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나. 특별상의 수상인원(안 제4조제2항)
- 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목 “(수상대상)”을 “(수상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의 “5년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사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강남구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법
인 또는 단체”로 한다.

안 제3조 제목 “(시상시기)”를 “(시상 시기)”로 하고, 본문 중 “강남구 구
민의 날”을 “강남구민의 날”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하되,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를 “하
되, 특별상의 경우 5명 이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신
설한 단서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를 삭
제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중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심
사위원회”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

하고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남구 부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상부문”을 “시상 부문”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14조(중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1조의 제목“(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을“(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중 “수상후보자”를 “수상 후보자”로 한다.

안 제13조(중전의 제15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부터 안 제17조(중전의 제14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같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같다.

- 1. ~ 13. (생략)
- ② 구민의 상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 1. ~ 13. (현행과 같음)
- ② -----
----- 하되,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1. ~ 13. (현행과 같음)
- ② -----
----- 하되, 특별상의 경우 5명 이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심사기준) -----
-----.

제5조(심사기준) -----
-----.

- 1.·2. (생략)
- 3. 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

- 1.·2. (현행과 같음)
- 3. ----- 두 -----

- 1.·2. (현행과 같음)
- 3. ----- 두 -----

의 귀감이 되는 모범
가족

4. ~ 9. (생략)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의 상
의 수상대상을 심사하
기 위하여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강남구 부구
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생략)

나. 각 시상부문에 관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심사
위원회-----
-----.

② -----

-----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
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설
치 및 구성) ① -----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
-----.

② -----

----- 구성한다.
<후단 삭제>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현행과 같음)

나. 각 시상 부문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신 설>

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

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
한 기관이 수상후보
자를 추천한 사항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제11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① -----

----- 해당 안건-----
-----.

1. -----
----- 경우
2. -----

----- 경우

② -----

-----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③ 위원-----
-- 제2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생략)

<신 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 ① (현행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p><u>제12조 ~ 제14조 (생략)</u></p>	<p><u>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u></p>	<p><u>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u></p>
<p><u>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제13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6조(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이 조례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수상대상)”을 “(수상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강남구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의 제목 “(시상시기)”를 “(시상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을 “강남구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를 “하되, 특별상의 경우 5명 이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세”를 “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강남구 부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상부문”을 “시

상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총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수상후보자의 추천)”을“(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이하 “구민의 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수상 대상)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2. 강남구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법인 또는 단체</p>
<p>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시상 시기) ----- 강남구민----- ----- -----.</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p> <p>1. ~ 13. (생략)</p> <p>② 구민의 상은 각 부문마다 1</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같 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p>

명 또는 1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
4. ~ 9. (생략)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구민의 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하되, 특별상의 경우 5명 이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
-----.

1. 2. (현행과 같음)
3. ----- 두 -----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
----- 공적심사위원회 -----
-----.
- ② -----
----- 구성한다.
- ③ -----

-----.

1. 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생략)

나.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 부구청장-----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시상 부문-----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항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4.

8.>

<신 설>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생략)

<신 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1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이 조례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주민자치과

1. 제안이유

특별상의 수상인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상 심사기준 및 후보자조사 근거를 재정비하여 수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의 상 중 특별상의 수상인원을 1명에서 다수로 변경하여 구민포상기회 확대함(제4조 제2항)
- 나.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모범가족상의 심사기준 중 세 자녀 기준을 두 자녀 기준으로 변경(제5조)
- 다. 수상후보자 공적조사의 주체를 감사담당관에서 간사(주민자치과장)로 변경하여 현행화(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7. 18. ~ 2025.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년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를 “강남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를 “하되,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제3호 중 “세”를 “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위원회”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해당 안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항”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위원 본인”을 “위원”으로, “제2항의 사유”를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이하“ 구민의 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은 <u>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수상대상)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 -----.</p> <p><u>1. 5년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u></p> <p><u>2.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u></p>
<p>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u>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시상시기) ----- <u>강남구</u> ----- ----- -----.</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u>다음 각 호와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u></p> <p>1. ~ 13. (생략)</p> <p>② 구민의 상은 각 부문마다 1</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u>같</u> ----- ----- ----- <u>다.</u></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p>

명 또는 1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
4. ~ 9. (생략)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구민의 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 하되,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기준) -----
-----.

1. 2. (현행과 같음)
3. ----- 둔 -----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
-----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② ----- 구성하고 -----
-----.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항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해당 안건-----
-----.

1. -----
-- 경우

2. -----
----- 경우

② -----

----- 있고,

<후단 신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제2항-----

-----.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생략)

<신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이

조례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3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

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이가연(02-3423-5198)